

<p>제2020-64호 2020년 4월 3일(금)</p>	<p>시  보 여수시</p>	<p><b>시 정 지 표</b>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907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선원동-주영\*) 4  
 ○ 여수시 공고 제2020-923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0-924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 공고 11

기 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0 - 9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허가(승인) 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7-63 (‘17.7.13)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해양항만레저과)	여수시 신덕동 597, 오천동 908-10번지 지선	2,196	2020. 4. 3.	신덕지구 연안정비사업
2018-65 (‘18.5.14.)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해양항만레저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66-6번지 지선	590	2020. 4. 3.	우두지구 연안정비사업 (물량장 설치공사)
2018-83 (‘18.7.9.)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해양항만레저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26-1번지 지선	542	2020. 4. 3.	우두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안 호안설치공사)

2020. 4. 3.

여 수 시 장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등기우편으로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통지서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3. 처분원인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령여부 확인이 않됨
4. 처분대상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층수	동수	주용도
2017-허가민원과-신축허가-181	주영욱	여수시 선원동 1309-9	583.1	지상4층	1	다가구주택

- ※ 청문일시 : 2020. 4. 29. 16:30
- ※ 청문장소 :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1층)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3.

여 수 시 장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및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8조(재정지원 등)에 따라 2020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 여 수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0.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예산 : 420백만원(도비 126, 시비 294) \* 국가직접지원, 민간(자부담) 별도
- 사 업 량 : 약 340여 세대
  - ※ 에너지원 및 사업상황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2020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

#### 2.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한국에너지공단(센터)로부터 주택지원사업에 승인된 주택소유자에 한함)

구 분	신 청 자 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수시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 3.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지원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설비용량		사업비 상한액	국 비 (50%)	지방보조금(20%)			자부담 (30%)
					소계	도비 (30%)	시비 (70%)	
태양광	단독	2kW 초과 ~ 3kW이하	5,028	2,074~2,514	335/kw	100/kW	235/kW	1,509
	공동	~30kW/동	-	908/kW		300	255/kW	
태양열	14㎡이하		-	3,962~8,162	73/㎡	21.9/㎡	51.1/㎡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금액 차등
	14㎡초과 ~ 20㎡이하		-	8,620~10,320	65/㎡	19.5/㎡	45.5/㎡	
지열	17.5kW이하		-	7,255~11,147	120/kW	36/kW	84/kW	
연료전지	1kW이하		-	15,578	1,000/kW	300/kW	700/kW	

\* 태양광 3kW기준 사업비 상한액 : 5,028천원(국 2,514/ 도 300/ 시 705/ 자부담 1,509)

\*\*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 설치 시, 신청 전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의 권고

#### 4. 보조금 신청 접수 방법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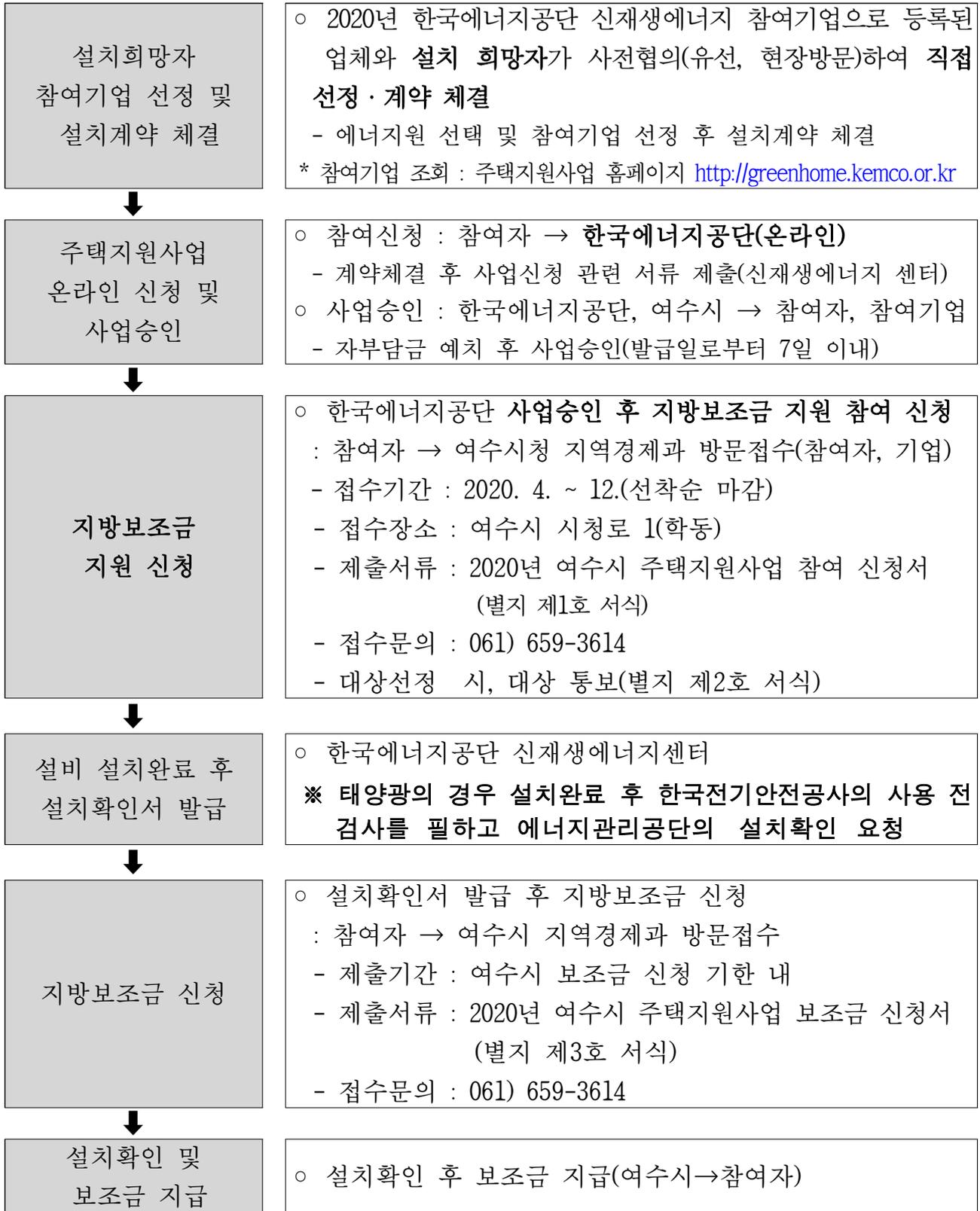
- 접수기간 : 공고일 ~ '20. 12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처 : 여주시청 지역경제과(061-659-36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기업
  - 신청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후)  
주택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지 제1호 서식)  
[첨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 증빙서류,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등
    - (참여업체 재생에너지 설치 완료 후)  
주택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  
한국전기안전공사검사필증,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재생에너지 설치 전·후 사진,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등
- ※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원본서류 제출)

##### <신청서류 안내>

- ▶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공고 → 고시공고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검색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후 여주시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신청기한 내 설치를 완료(설치확인서 기준)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 본 지원사업은 설치 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제품 등 시공업체와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주시와 관련 없음

○ 지원절차



- 주택지원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27)

## 5. 주의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0-194호, 2020. 3. 20.)와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책임은 설치 희망자에게 있으므로 설치 희망자는 참여기업 선정에 주의를 기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설치 희망자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여수시의 절차 및 기준을 적용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미흡 및 신청서 작성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설치 업체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적합 승인은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 전라남도·여수시 보조금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수시의 지원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참여기업은 신청자를 확보함에 있어 제품 및 효율성의 허위광고, 저가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열악한 시설물 설치 등 부실시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참여기업은 설치용량 산정 시 이용효율 및 향후 세대 운영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설치 용량을 검토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중 및 완료 후 여수시에서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자는 사업신청 이후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변경 또는 사업 포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하자이행 보증 기간(3~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수시는 설치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시공 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2020년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이동전화 :		
신 청 분 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예 상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용 량			
참 여 업 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팩 스		
설 치 장 소					
설 치 기 간	2020. . . ~ 2020. . .				
<p>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여수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 . . 월 . . .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 참여기업 (인)</p> <p><b>여 수 시 장 귀하</b></p>					
<p><b>첨부서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li> <li>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li> <li>3. 설치 대상 시설 건축물대장 1부.</li> <li style="margin-left: 20px;">* 추가 첨부 서류) 설치 대상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명의자의 자필서명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동의서 1부</li> <li>- 공동명의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li> </ul> </li> <li>4. 주택지원사업 승인내역(신·재생에너지센터) 1부.</li> <li>5.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1부.</li> <li>6.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신·재생에너지센터) 1부.</li> </ol>					

## 2020년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대상 통보서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귀하는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용 량 :
- 설치장소 :
- 용 도 :
- 사 업 비

총사업비	지원금액(원)			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참여기업 : 담당자 :

2020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29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0. . .

보조사업 참여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서식 4]

##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 지원 단체·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익을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보조금지원 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0-924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6호(2020.3.20.)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공모에 우리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3.

여 수 시 장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3.(금)~ 4. 10.(금) 18:00 까지
- 접수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별첨1),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업체와 모니터링업체, 설계·감리업체 등으로 참여 업체를 구성하고 태양광 설치업체가 주관업체로 신청
  - 설치업체(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 설치업체(태양열)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건물)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 모니터링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인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3.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첨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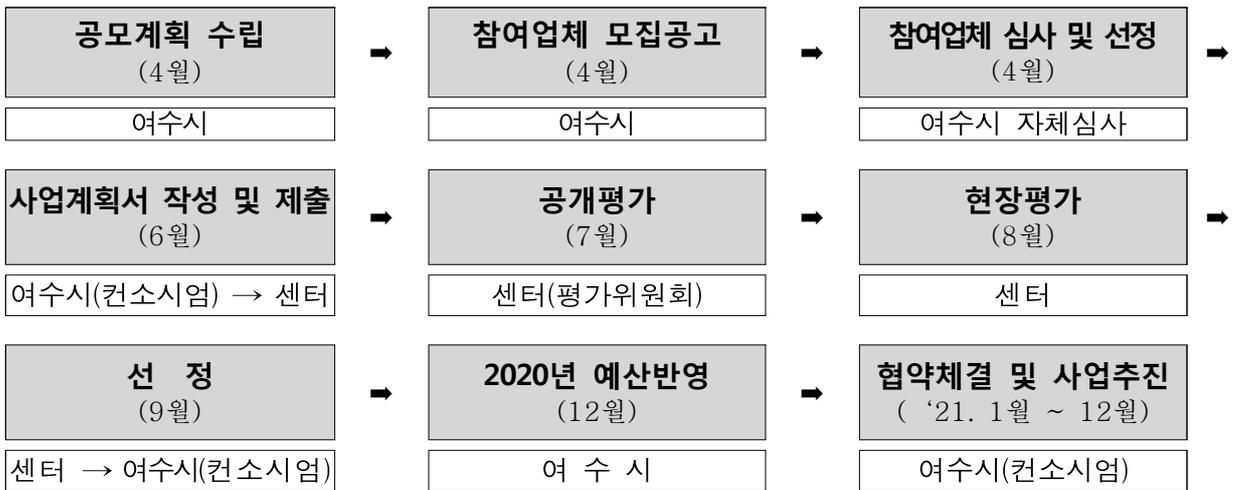
### 4.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선정일시 : 2020. 4. 14.(화)
- 선정결과 : 여수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5. 제외 대상

- 에너지원, 사업계획, 사업비 등 보완협의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 기술인력, 사업실적 등 제출서류 및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 6. 추진절차



### 7.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6호(2020.3.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가 컨소시엄 대상자로 승계함
- 본 컨소시엄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참여업체 모집공고에 1개 컨소시엄 참여시에도 재공고 없음  
(공모사업 계획서 신청 기간 상 재공고시 사업진행 어려움)

- 붙임 1.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청서 1부  
 2. 제출서식 1부.  
 3.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업체 평가기준 1부.

**【별첨 1】**

<b>여수시 2021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청서</b>				
참여업체 (주관업체, 태양광)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사명	(인)	대 표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p>상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li> <li>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li> <li>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붙임 1.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2. 사업제안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 제출서식(사용인감계,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위임장, 발표자 인적사항) 각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1.2em;"><b>여수시장 귀하</b></p>				

**【별첨 2】제출서식**

**[서식 1]**

#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제출서식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모집 신청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첨 2】제출서식

[서식 3]

#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제출서식

[서식 4]

#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공고한 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제출서식**

[서식 5]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 여수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첨 3】**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평가지표〉**

평가분야	선정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기준
업체전문성 (주관업체)	시공실적 (20)	지역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시공 실적		평가 기준표에 의함
	신용도 (10)	업체신용도		평가 기준표에 의함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평가 기준표에 의함
	지역업체 (10)	전라남도 내 소재 업체		평가 기준표에 의함
	기술개발 (10)	기술인증 보유 여부		평가 기준표에 의함
업체전문성 (참여업체)	시공실적 (20)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		평가 기준표에 의함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평가 기준표에 의함
	지역업체 (10)	전라남도 내 소재 업체		평가 기준표에 의함
합 계				

※ 총 평가점수 = 주관업체 평가점수 + 각 참여업체 평가점수의 평균

- 동점자 발생시 ①지역업체, ②시공실적이 높은 순으로 선정(①,②도 동일시 추첨)
- 총점 60점 미만 업체 선정 제외

**〈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대상	배 점
시공실적(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시공 실적)	주관업체	20점
기업신용도		10점
기술인력		10점
지역 업체		10점
기술인증 보유 여부		10점
시공실적	참여업체	20점
기술인력		10점
지역업체		10점
합 계		100점

## 〈컨소시엄 참여업체 평가관련 세부기준〉

### ① 지역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총점 20점) [주관업체]

#### ○ 설치개소(10점)

시공실적	35건 이상	30건 이상	25건 이상	20건 이상	없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 설치용량(10점)

시공실적	2,000kW이상	1,500kW이상	1,000kW이상	500kW이상	없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0점

○ 사업신청 주관업체(태양광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증명 : 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발행)서류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 ② 신용도 :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상(총점 10점) [주관업체]

등 급	AAA ~ A <sup>-</sup>	BBB <sup>+</sup> ~ BB0	BB <sup>-</sup> ~ B <sup>-</sup>	CCC <sup>+</sup> 이하	없음, 미제출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0점

####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2020.4.10)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http://www.fss.or.kr))

### ③ 지역 업체(총점 10점) [주관업체, 참여업체]

-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뜻함
- 증명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등 급	참여업체 모두 여수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업체 일부가 여수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전남 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업체 일부가 전남 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전남 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점 수	10	8	6	4	2

④ 기술인증 배점기준(총점 10점)

[주관업체]

기술등급	고도기술	녹색기술	일반기술	없음
점 수	10점	6점	4점	0점

※ 중복평가는 하지 않으며 제일 큰 점수로 평가

<기술인증 구분>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제조사(KS 제품 등록 업체)
녹색기술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일반기술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 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 에 대해서만 인정)

※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제조사(한국에너지공단 KS 인증서 제출)

※ 유효기간 만료 제품은 인정 안됨.

⑤ 기술인력보유 배점기준(평균 10점)

[주관업체, 참여업체]

○ 기술인력 보유현황(10점)

-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10점 한도	<b>가. 산업기사 이상</b>			
	① 7인 이상	10	10	10
	② 6인	9	10	10
	③ 5인	6	9	10
	④ 4인	4	6	9
	⑤ 3인	3	4	6
	⑥ 2인	2	3	4
	<b>나. 기능사</b>			
	① 7인 이상	6	6	6
	② 6인	5	6	6
	③ 5인	4	5	6
	④ 4인	3	4	5
⑤ 3인	2	3	4	
⑥ 2인	1	2	3	

○ 기술인력 근무경력(10점)

-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 점
10점 한도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10
	②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8
	③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6
	④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 ~ 300개월 미만	4
	⑤ 200개월 미만	⑤ 100개월 미만	2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500개월 이상	① 400개월 이상	4
	② 2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②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3
	③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2

※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컨소시엄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 각각 10점 만점으로 계산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사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에너지원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바이오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3. 풍력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력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6. 해양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7. 폐기물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8. 지열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9. 수소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10. 수열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5. 에너지원별 해당 기술인력분야의 기술인력만 인정되므로 필히 기술분야 확인 요망
6.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7.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8.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9.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서류만 인정(화면인쇄 불인정)
  - \*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는 불인정**
10. 기술인력의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20개월 + 홍길순3개월)
12.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예) 홍길동이 한국기업(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 ⑥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20점)

[참여업체]

### ○ 설치용량(15점)

한도	태양광(kW)	태양열(m <sup>2</sup> )	지열(kW)	수열에너지(kW)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kW, m)	배점
15점 한도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15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10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5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3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

### ○ 설치개소(5점)

한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점
5점 한도	300이상	15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5
	100~300미만	100~15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3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2
	50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1

### ※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증빙자료 제출가능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공고일 이전의 설치확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 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향후 평가 시 확인)
  -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공고개시일 ~ 접수마감일**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